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임시회(7. 10. ~ 7. 21.)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 제321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 총 건 : 의원발의 18건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3. 7. 21.)
의회운영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원안가결
기획행정 위원회 (5)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류인출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래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성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원안가결
경제산업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길로 의원	수정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4)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지영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대현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교육 위원회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윤미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엄기호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21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7. 21.(금)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 제32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심영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삼척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가독성을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의원이 1), 2), 3)의 행위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비례)



강원자치도에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허용한도”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미비시 재정건전화 대책 등을 마련하게 하여 강원자치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자치도의 허용한도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허용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4년마다 재검토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용한도의 적정성 및 재정준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자문위원회를 둔다.

###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태백2)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하며,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자치도의 포상에는 공로기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본청의 실·국·본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강원자치도 내 시장·군수, 산하기관의 장 및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도민은 포상(이 경우 상장은 제외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③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포상이 추천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⑤ 포상을 받은 자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류인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강원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 및 운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국내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하 “명예도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는 명예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도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및 그 밖의 도정시책·홍보자료 등 제공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거나 명예도민이 취소를 원하여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자치도에 지역본부를 설치함에 따라 공인 체계를 정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 지역본부·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직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출장소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헌혈권장 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는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으로 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2)



강원자치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련 관광사업 및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및 팸투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팸투어 사업 및 국내외 홍보관·박람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중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 기술 연구, 전시관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②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박호균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 공동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김기철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정선),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찬흥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7),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이무철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4),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흥천2)

강원자치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육성 품종보호권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품종보호권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 특허작목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윤길로 의원



정재웅 의원



김용복 의원



김기철 의원



강정호 의원



박찬흥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이무철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폭염 상황·행동요령 등을 방송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및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민 및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 공동발의 :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자치도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자·주관자인 행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 및 강원자치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및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무부서에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고,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박대현 의원

박호균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정원 중 시·읍의 여성 정원을 50명으로, 면의 여성 정원을 30명으로 하여 남성의용소방대원과 정원을 동일하게 하고, 임기가 연장된 소방서 연합회장의 소방서 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강원자치도에 주민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전세보증금 및 소득기준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임차인이 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①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정보제공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강원자치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 상징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②의 사업 추진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강원자치도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하여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체형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 공동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관련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엄기호 의원



김용래 의원